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보고서

대표이사: 선영주



목차

1.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2
	케이지나 이번도 내지
2.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11
2.1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의 필요성
2.2	! 위험도 산정 시 고려사항
2.3	기인정보 위험도 산정식
2.4	기인정보 위험도 산정결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흐름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한다.
 - '이행(Y)' 및 '해당없음(N/A)'로 평가된 항목은 침해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미이행(N)' 및 '부분이행(P)'로 평가된 항목은 평가결과를 근거로 구체적인 침해요인 분석 및 도출이 필요하다.
- 침해요인은 유사 침해사고 사례, 대상시스템 및 업무특성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1.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질의문 코드	질의문	평가근거 및 의견	개인정보 침해요인	법적 준거성	
1.1.1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를 법령기준에 따 라 지정하고 있습니까?		의 경력 부족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위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위반	
1.1.2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에게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책화하고, 이에 근거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리방침'과 '개인정보 시 스템 보안지침'에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역할을 명시하였으 나, 법적으로 개인정보	게 수행되지 않아 책 임의 불명확함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위반	

		있음.		
1.2.1	개인정보의 분실·도 난·유출·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내부 의사결 정 절차를 통하여 필수 사항을 포함하 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있 습니까?	본 센터는 '개인정보시 스템 보안 지침' 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이 수 립되어 있으나, 내부 관리계획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음.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의 자 격요건이 누락되어 있 어, 책임자의 적격성 검증이 부족해지고, 이 로 인해 개인정보 보 호 관리가 미흡해질 위험이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 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 전성 확보 조치) 위반
1.2.2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는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 획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하고 있습니까?	본 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방침'과 '개인정보시스템 보안 지침'에 내부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 나, 내부 관리계획에 대 한 개인정보취급자들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증적은 발견되지 않음	내부 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이 이루어지 지 않아, 개인정보 보 호 조치가 제대로 이 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침 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 전성 확보 조치) 위반
1.2.3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태 점검 등 개인 정보 보호 활동에 대한 연간 수행계획 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까?	본 센터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자체교육 계획 '의 붙임 '2024년 개인 정보보호 교육 일정'에 따라 교육 계획을 수립 (주요 추진 과제 단위로 구분하고 목적, 대상, 횟수, 교육방법,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에 대해서는 계획에 따라 교육을시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적이 누락되어 있음.	연간 교육 계획에 따른 이행 증적이 누락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실제로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보호 수준이 저하될 위험이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제28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위반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4조(내부관리계획의수립·시행 및 점검)위반
1.3.1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본 센터에서는 '개인정 보처리방침' 제 13조, 14 조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책임자 연 락처와 문의처를 안내하 고 있으며, 제 15조에 외부 기관에 침해사고를 신고하는 방법이 기재되 어 있음.	정보주체에게 침해 사실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나, 안내된 절차가 복잡하거나 접 근이 어려울 경우, 실제 침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지연되어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0(개인정보 처리방 침의 수립 및 공개), 제34(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통지·신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내용 및 공개 방법 등) 위반
1.4.1	개인정보 열람, 정 정·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 통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 장과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를 수립하 여 실시하고 있습니 까?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 대응 가능한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있으	처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20조(정보주체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등 통지),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위반
1.4.2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이의를 제 기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절차를 마련하 고 안내하고 있습니 까?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가 권리 행사에 어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위반
1.4.3	개인정보의 이용·제 공 내역이나 이용· 제공 내역을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 체에게 통지하고 있 습니까?	본 기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 및제공 내역을 통지하고 있지 않음	공 내역을 정보주체에 게 통지하지 않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할위험이 있으며, 이로인해 개인정보 오남용및 권리 침해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 지)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 지) 위반

	2.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질의문 코드	질의문	평가근거 및 의견	개인정보 침해요인	법적 준거성	
2.1.1	대상시스템에 대해 업무상 개인정보 취 급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업무수 행에 필요한 최소한 의 인원이 개인정보 를 처리하도록 개인 정보취급자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본 센터는 '개인정보시 스템 보안 지침'의 1장 에서 조직별 개인정보보 호 취급자를 지정하고 있지만, 각 정보시스템 의 개인정보취급자를 목 록화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	록화하여 관리하지 않 아, 필요 이상으로 많 은 인원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 며, 이로 인해 개인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 자에 대한 감독) 위반	
2.1.2	대상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역할 및 책임 부여, 개인정 보보호 교육, 개인 정보보호 서약서 작 성 등 관리·감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본 센터에서는 '개인정 보시스템 보안 지침'의 1장에 개인정보보호 취 급 구성원의 역할 및 조 치사항울 부여하고 있 음. 하지만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 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 무'에 대해 '개인정보 유 출 부서장'의 역할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아닌 '신속대응팀장'이 위임한 업무에 대한 언 급만이 존재함. 또한 '5. 개인정보 파기 시 개인 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 는 주체가 정해지지 않 은 상태임.	가 불명확하여 관리·감 독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음. 이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 조치가 미 흡해져 침해 위험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5조(개인정보취급 자에 대한 감독), 제52 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제55조 (개인정보파일의 파 기), 제56조(개인정보 파일 등록 사실의 삭 제) 위반	

	대상시스템에서 개	본 센터에서는 '개인정	개인정보파일 대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인정보파일을 신규	보 시스템 보안지침'의	불필요한 항목을 포함	제32조(개인정보파일
	로 보유하거나 변경	1장에서 개인정보 담당	하고 있어 관리가 비	의 등록 및 공개) 위반
	하는 경우, 개인정	자 및 취급자의 개인정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보파일대장을 작성	보파일 관리대장 작성에	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하거나 변경하도록	대한 안내가 있고, 실제	개인정보의 정확한 관	시행령】
	계획하고 있습니까?	로 개인정보파일 대장이	리와 보호가 어려워질	제33조(개인정보파일
2.2.1		현행화 되어 관리되는	위험이 있음.	의 등록사항 등) 위반
		상태임. 하지만 여행사		
		관련 업무시스템 등 실		
		업무와 동떨어지고 불필		
		요한 항목에 대한 내용		
		도 포함되어 있어, 면밀		
		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질의문 코드	질의문	평가근거 및 의견	개인정보 침해요인	법적 준거성
3.1.3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른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거나, 법령등에 따라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본 센터에서는 '면허시 험 응시내역'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되는 항목인 민감정보 '장애조건'을 수집하고 있지만, 민감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는 별도로 받고 있지 않 음.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정보주체의 권리 가 침해될 위험이 있 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어 법 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처 제23조(민감정보의 처 리 리 제한) 위반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위반 범
3.1.5	주민등록번호는 법 적 근거가 있는 경 우에 한하여 수집하 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주 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 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제	하지 않고 회원 가입 이 가능한 대안을 제 공하지 않아,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위 배되며, 불필요한 개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 호 처리의 제한) 위반
3.1.9	이 처리할수 있는개인정보의항목과그 처리의법적근거를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처리하는	나타나 있 <mark>지</mark> 않으며, 동 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와 동의를 받아 처리 하는 개인정보가 구분 되지 않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
3.1.10	-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 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민감정 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 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선택 방법이 안내되지 않아,정보주체가 자신의 민감정보 보호에 대한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	[개인정보보호법] 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30조(개인 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반

	택하는 방법을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 게 알리도록 계획하 고 있습니까?		출 및 권리 침해 가능 성이 증가할 수 있음.	
3.3.3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하거 나 이를 제3자 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 보주체의 별도 동의 를 받거나, 법령 등 에 따라 적법하게 목적 외 이용·제공 하도록 계획하고 있 습니까?	본 센터는 교통교육업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제공하고있으며, 별도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동의를 받으나, 목적 외 제공에대한 내용은 누락되어있음.	목적 외 이용 및 제3 자 제공에 대한 별도 의 동의 절차가 누락 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
3.3.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동의서	정보 제공 항목이 최 소한으로 제한되지 않	[개인정보보호법]
3.3.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목적 외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내역이 기록·관리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 관리 투명성이 부족해 지고, 침해 사건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18조 위반 [개인정보 처리 방법 에 관한 고시] 제3조(개인정보 보호 업무 관련 장부 및 문 서 서식) 위반
3.3.6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본 센터는 교통교육업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제공하고있으며, 별도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동의를 받으나, 목적 외 제공에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목적 외 이용 및 제3 자 제공 내역이 관보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아, 개인정 보 처리의 투명성이 부족해지고, 정보주체 가 자신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위반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공공기관에 의

	계획하고 있습니까?	있음. 내용 누락으로 관	이용 상황을 알지 못	한 개인정보의 목적
		련 내용은 관보 또는 인	해 권리 침해 위험이	외 이용 또는 제3자
		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높아질 수 있음.	제공의 공고) 위반
		해 공개되지 않음.		
	개인정보를 제3자에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는	통신 구간에 암호화	[개인정보 보호법]
	게 제공하거나 연계	제3자 제공할 개인정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	제18조(개인정보의 이
	하는 경우 암호화	의 보유기간을 지정함.	아, 제3자에게 제공되	용·제공 제한), 제19조
	조치, 보유기간 지	그러나, 통신 구간에 암	는 개인정보가 전송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정 등 안전성 확보	호화 조치가 되어 있지	중에 유출될 위험이	자의 이용·제공 제한),
	를 위해 필요한 조	않음. 따라서 안전성 확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제29조(안전조치의무)
3.3.7		많음. 띄디지 한편이 목 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	
	치를 적용하도록 계		의 안전성 확보를 저	위반
	획하고 있습니까?	적용이 미흡함. 	해하여 보호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
				전성 확보조치) 위반
	개인정보 처리에 관	본 센터의 수탁기관 4	수탁기관이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한 업무를 위탁 받	곳은 개인정보 처리 업	처리 업무를 제3자에	제26조(업무위탁에
	아 처리하는 자가	무를 제3자에게 다시	게 다시 위탁할 경우,	따른 개인정보의 처
	위탁 받은 개인정보	위탁하지 않음. 다만, 이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_
	처리 업무를 제3자	후에 수탁기관이 개인정	않으면 정보주체의 개	다 세 <i>리)</i>
3.4.3	에게 다시 위탁하려	보의 처리 업무를 제3	인정보가 무단으로 제	
	는 경우에는 위탁자	자에게 다시 위탁할 가		
	의 동의를 받도록	능성이 존재함. 위탁자	이 있으며, 이는 개인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게 극의고 있습니까:	는 문구를 '개인정보 관	법적 문제가 발생할	
		리 방침'에 추가해야 함.	수 있음.	7개이저나 보충병기
	다른 법령 등에 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女又
	라 개인정보를 보존			제21조(개인정보의 파
	할 경우 해당 개인	,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기) 위반
	정보 또는 개인정보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파일을 다른 개인정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보와 분리하여 저장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	분리 관리가 제대로	
2 5 2	·관리하도록 계획하	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5.2	고 있습니까?	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무단 접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및 오남용 위험이 증	
		경우, 해당 개인정보(또	가할 수 있음.	
		는 개인정보파일)을 별		
		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		
		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		
		기기의 보인 영모를 된 리하여 보존해야 함.		
<u> </u>		니어서 포근에야 함.		

		4. 대상시스템의 기	기술적 보호조치	
질의문 코드	질의문	평가근거 및 의견	개인정보 침해요인	법적 준거성
4.1.3	정보구체가 비밀번 호 변경 등 중요 정 보 접근 시 비밀 번 호 재확인 등 추가 적인 인증이 적용되 도록 계획하고 있습 니까?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 조회·변경 시 비밀번호 재확인 등의 추가 인증 절차가 적용되어 있지 않음	비밀번호와 같은 주요 정보의 조회, 변경 시 에 추가 인증이 없다 면 기밀성과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이 높음.	본 항목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한 기술적 보호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 호를 위한 권장사항임
4.1.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인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 미접속시계정 잠금, 동시 접속 제한, 관리자 로그인 알림 등 보호대책이 적용되도록계획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동시 접속 제한 기 능은 구현되어 있으나 장기 미접속시 계정 잠 금, 특수 권한 로그인 시 알림 등이 설계에 반 영되어 있지 않음	관리자 계정과 같은 특수권한에 대한 비정 상적인 접근 방지 대 책의 부재로 인해 개 인정보의 무단 접근 및 유출 위험성 존재 함.	본 항목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한 기술적 보호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 호를 위한 권장사항임
4.1.9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의 접근권한을 부 여, 변경 또는 말소 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 간 보관하도록 계획 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의 부여부터 말 소한 내역에 대한 기록 을 최소 3년이 아닌 2 년 이상 보관하는 것으 로 확인함	접근권한 기록 보관 기간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여 권한 남용 및 부적절한 접근에 대한 추적이 어려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5조(접근 권한의 관 리) 위반
4.2.7	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업무용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호조취를 취하기 위한 MDM 등의 시스 템 등이 도입되어 있지 않음	분실·도난 시 비밀번호 설정과 같은 추가 보	
4.8.1	개발 환경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 스트 데이터 생성· 이용·파기 및 기술 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대책을 적용하 도록 계획하고 있습	현재 문서 내에서는 개 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테스트 데이 터 생성·이용·파기 및 기 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확인할 수 없었음.	개발 환경에서 다뤄지는 개인정보와 같은데이터에 대한 생성,이용,파기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없기때문에 개발 과정에서의 유출 가능성이 존재함.	본 항목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한 기술적 보호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 호를 위한 권장사항임

	니까?			
4.8.2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 마스킹, 웹 브라우저 우측 마우스 버튼 제한, 임시 파일 및 캐시 통제, 카드번호 등 중요정보에대한 복사·화면캡쳐 방지 및 키보드해킹 방지 등 보호대책을 적용하도록계획하고 있습니까?	복사화면 캡처 방지 및 키보드 해킹 방지 등의 보호 대책을 적용하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다루는 화면에서 마스 킹 처리, 복사 붙여넣 기 등 클립보드 기능 의 제한, 키보드 해킹 방지 등의 보호대책이 없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용자가 접근 시에 개인정보를 손쉽게 유 출할 수 있는 환경 여 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본 항목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한 기술적 보호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 호를 위한 권장사항임
4.8.3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할 경우 출력· 복사물에 대하여 출 력자·출력일시 표시 등의 보호대책을 적 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우 출력자와 출력일시 를 표시하는 등의 보호 대책을 적용하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를 전자적 환경이 아닌 종이와 같은 문서로 출력할 경우 출력자와 출력일시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 유출사고발생 시 책임추적성관련해서 문제가 생길수 있고 유출이 더용이해짐.	본 항목은'개인정보 안 전조치 의무'를 위한 기술적 보호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 호를 위한 권장사항임 (단, 2024.9.15. 이후에 는 의무사항)
4.8.4		도를 특정하고, 출력 항 목을 최소화하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를 보게 되는 모	

	5. 특정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질의문 코드	질의문	평가근거 및 의견	개인정보 침해요인	법적 준거성	
5.1.2	고정형 영상정보처 리기기 설치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 인의 의견을 수렴하 도록 계획하고 있습 니까?	현재 문서 내에서는 고 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 렴하는 계획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 이로 인해 해당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 움.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할 시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로 설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23조(영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8조(사전의 견 수렴) 위반	
5.1.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인식할 수 있도록안내판 설치하거나홈페이지 등을 통해안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문서 내에서는 고 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후 정보주체가 쉽 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 내판을 설치하거나 홈페 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 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 었음. 이로 인해 해당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 를 평가하기 어려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정보를 다루기도 하기 때문에 정보주체 가 이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나 이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영상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인 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24조(영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9조(사전의 견 수렴) 위반	
5.1.4		현재 문서 내에서는 고 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시 임의조작 및 음 성 녹음을 방지하는 계 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 이로 인해 해당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 하기 어려움.			
5.3.2	원본정보의 경우 특 징정보 생성 후 지 체 없이 파기하여 복원할 수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자료 료 3. 안전성 확보조치에 특징정보를 생성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생체인식정보의 비적 절한 관리로 인한 개 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고 생체인식정 보에 대한 처리에 대 한 지침이 없기 때문 에 사용자들이 정보	【생체정보 보호 가이 드라인】 생체인식정보 의 파기 위반	

		하고 있으나, 생체인식 정보에 대한 처리방침을 따로 명시해두지 않고 있음.	제공을 반대할 수 있음.	
5.5.3	가명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하기 전에 재식별 위험성 등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는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 용하기 위해 가명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만, 재식별 위험성을 사 전에 철저히 검토하지 않음.	가명정보가 시간이 지 난 후에 식별이 가능 해지는 가명정보의 재 식별 위험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이 존재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위반
5.5.4	다른 개인정보처리 자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결합전 문기관 또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도록 계획하고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는 결합전문기관 또는 데이 터전문기관을 통해 가명 정보를 결합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가명정보 결합 시 안 전성 부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이 존재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위반
5.5.5	가명정보 및 추가정 보를 안전하게 처리 하기 위한 내부 관 리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계획하고 있 습니까?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는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부 이행하고 있음. 그러나, 분리 보관 및 접근 통제와 관련된 세부 조치가 미흡하다 판단되어 개선될 필요가 있음.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해야함.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해 결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분리 보관과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유출이 개인정보유출로 이어질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가 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
5.5.6	추가정보는 별도로 저장·관리하거나 삭 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는 가명정보와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 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추가정보에 대 한 접근 통제와 분리 보 관의 강화가 필요하며,	추가정보는 가명정보 와 결합하여 특정인의 개인정보로 유추가 가 능하므로 불필요한 추 가정보에 대한 저장을 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저장 시에는 안전한 관리방법으로 하지 않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가 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삭제 절차의 적절한 이행을 통해 안전성을 더욱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5.6.1	업무를 목적으로 이 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운영 하려는 경우 법에 정한 기 준에 따라 적법하게 촬영하도록 계획하 고 있습니까?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 영할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하고 있음. 이러한 계획 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 그러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 분 이행이라 판단 내림.	업무용으로 설치된 영 상정보처리기기를 통 해 업무자들의 개인정 보가 수집이 되는 경 우인데 본 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이 잘못된 접근 으로 업무자들의 정보 를 수집할 가능성이 존재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2(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위반
5.6.2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 방송 또는 그 밖에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도록계획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촬영 시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안내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하지만 안내판 외의 불빛, 소리 등과 같은 적극적인 고지방법이 명시 되어있지 않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불빛, 소리 등과 같은 방법 이 명시되지 않으면 잘못된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 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2(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령】 제27조의2(이동형 영 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위반
5.6.3	영상정보 촬영 시 이동형 영상정보처 리기기에 대한 운영 ·관리방침을 수립하 도록 계획하고 있습 니까?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는 설치와 운영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 영할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 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절차 가 필요함.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운영을 할 때 명확한 규정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운영을 하면 적법하게 촬영을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한다는 계획에 어긋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2(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위반

2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2.1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의 필요성

침해 요인을 모두 조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치할 우선순위 선정
 단, 법적 의무사항은 필수적으로 조치 필요함.

2.2 위험도 산정 시 고려사항

- 위험도 산정 과정 및 결과는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 위험도 산정값은 실질적인 위험의 크기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함
- 법적 준거성 등 개인정보보호 영역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2.3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식

위험도 = 자산가치(영향도) + (침해요인 발생가능성 x 법적 준거성) x 2

자산가치 (개인정보 영향도)

*자세한 사항은 개인<mark>정도 영향도 등급표</mark> 문<mark>서</mark> 참고

등급	설명	자산가치		
	그 자체로 개 <mark>인 식별이</mark> 가 <mark>능</mark> 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	女		
1등급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엄격히 제한된 개인정보				
	유출 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 부여 가능 및 대외 신임도 크게 저하			
257	조합되면 명확히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2		
2등급	유출 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 부여 가능 및 대외 신인도 저하	3		
n = □	고드 기인정보와 결합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 개인정보			
3등급	제한적인 분야에서 불법적인 이용이 가능한 정보	1		

법적 준거성 가중치

구분	법적 준거성	중요도
높음	법적 준수 사항	1.5
낮음	법률 외 요건 (권장사항)	1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구분	발생 가능 정도	중요도
매우 높음	해당 즉각적인 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있는 경우	3
높음	해당 침해요인의 발생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2
중간	해당 침해요인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낮음	해당 침해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0

2.4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결과

1)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자산명	개인정보 관리정책	이하드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1.1.1	8	5	1	1.5	
치체이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부족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					
침해요인	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자산명	개인정보 관리정책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THE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1.1.2	8	5	1	1.5	
침해요인	개인 <mark>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mark>	이 법령에 맞게	수행되지 않아	책임의 불명확힘	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mark>이로 인해 개인정보</mark>	보호 관리가 소홀	를해져 침해 위험	이 증가할 수 !	있음.	
자산명	개인정보 관리정책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110-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1.2.1	8	5	1	1.5	
침해요인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이 누락되어 있어, 책임자의 적격성 검					
B 41 ± C	증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	개인정보 보호 핀	<u></u>	위험이 있음.		
자산명	개인정보 관리정책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110-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1.2.1	8	5	1	1.5	
침해요인	내부 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					
	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침해 가능	성이 증가할 수	있음.		
자산명	개인정보 관리정책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1164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1.2.3	6	5	1	1.5	
침해요인	연간 교육 계획에 따른 이행	증적이 누락되어	네 있어, 개인정보	보 보호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	
급에표단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보호	수준이 저하될	위험이 있음.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이치드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1.3.1	11	5	3	1
침해요인	정보주체에게 침해 사실 신고	. 방법을 안내하	고 있으나, 안내	된 절차가 복잡	하거나 접근이
	어려울 경우, 실제 침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	이 지연되어 피	해가 확대될 위학	험이 있음.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FIEL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1.4.1	11	5	2	1.5
침해요인	동의철회 및 수집 출처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				
검에표한	불완전할 수 있으며, 이로 인정	해 개인정보 보호	호의 취약점이 빌	날생할 위험이 있	[음.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FIEL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1.4.2	11	5	2	1.5
침해요인	불복 청구 절차가 안내되지 (않아 정보주체가	권리 행사에 아	려움을 겪을 수	일 있으며, 이로
무세표단	인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게임포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1.4.3	14	5	3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	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아,	정보주체가 자	신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오남용 및 권
	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2) 대상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자산명	개인정보 관리정책	이성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2.1.1	7	5	2	1
침해요인	개인정보취급자를 목록화하여 관리하지 않아,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원이 개인정보에 접				
무에표근	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자산명	개인정보 관리정책	이하드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2.1.2	10	3	2	1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역할 및 책임 부여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절차의 책임 주체가				
침해요인	불명확하여 관리·감독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음.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해져				
	침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자산명	개인정보 관리정책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T 입고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2.2.1	5	3	1	1
침해요인	개인정보파일 대장이 불필요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검에표한	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의	정확한 관리와 5	보호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음.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이성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수집단계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3.1.3	14	5	3	1.5	
침해요인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					
	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어 법적 리	니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수집단계	110-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3.1.5	6	3	1	1.5	
침해요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 <mark>-</mark> 수집 원칙에 위배되며, 불필요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01+1-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수집단계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3.1.9	9	3	2	1.5	
	정보 <mark>주</mark> 체의 <mark>동의 없이</mark> 처리 <mark>가능</mark> 한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구분되					
침해요인	지 않아, 정 <mark>보주체가 자신의</mark>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음.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수집단계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3.1.10	9	3	2	1.5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과 비	공개 선택 방법	이 안내되지 않	아, 정보주체가	자신의 민감정	
침해요인	보 보호에 대한 선택권을 행	사하지 못할 위험	험이 있으며, 이	로 인해 개인정	보 유출 및 권	
	리 침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및		개인정보	발생	법적	
	개인정보 관리정책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급 · 준거성	
처리단계	제공단계			100	_ 10	
질의문 코드	3.3.3	9	3	2	1.5	
침해요인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검에표한	│ 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며, 이-	는 개인정보 보호	호법 위반으로 법	d적 문제가 발생	g할 수 있음. l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및 개인정보 관리정책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제공단계	12 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제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3.3.4	12	3	3	1.5	
크리正 포프	3.37.					
침해요인	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					
_ " _	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1 24 17 1	_ " "_ "		
-1.1.E4	홈페이지 시스템 및		-110171	W1 111	u1=1	
자산명	개인정보 관리정책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제공단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3.3.5	13	5	3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	데3자 제공 대장	'이 존재하지 않	아, 목적 외 이	용 및 제공 내	
침해요인	역이 기록·관리되지 않음으로	써, 개인정보 관	리 투명성이 부	족해지고, 침해	사건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음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제공단계	., .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3.3.6	8	5	2	1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이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요인	처리의 투명성이 부족해지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 상황을 알지 못해 권리					
TIALIN	침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케이커니	HLIU	шы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제공단계	44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3.3.7	11	5	고디노 케이저 =	1 지 저소 주에	
침해요인	통신 구간에 암호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가 전송 중에 으측된 일하다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이 아저서 하나를 저해하여 비중 스즐이 난아지 수					
무세표단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저해하여 보호 수준이 낮아 <mark>질 수</mark> 있음.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0141-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제공단계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3.4.3	11	5	2	1.5	
	수탁기관이 개인정보 처리 업	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경	경우, 위탁자의 등	동의를 받지 않	
침해요인	으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제3자	나에게 제공될 위	위험이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파기단계	1104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3.5.2	14	5	3	1.5	
41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침해요인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분리		이루어지지 않을	를 경우, 개인정보	보의 무단 접근	
	및 오남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4) 대상시스템 기술적 보호조치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이하트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4.1.3	11	5	3	1	
침해요인	비밀번호와 같은 주요 정보의 장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없다면 기밀성고	마 무결성이 보 마 무결성이 보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112 71004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급 기 준거성	
질의문 코드	4.1.7	11	5	3	1	
	관리자 계정과 같은 특수권한					
침해요인	의 무단 접근 및 유출 위험성		TE BE ON	-11 1-1 1 1 11-11-1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OLÈLE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4.1.9	9	3	3	1	
침해요인	접근권한 기록 보관 기간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여 권한 남용 및 부적절한 접근에 대한 추적이 어려움.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01+1-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4.2.7	9	5	2	1	
침해요인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 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전		설정과 같은 3	추가 보호조치 등	등이 없기 때문	
자산명	개인정보 <mark>처리시스</mark> 템	이하다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u> </u>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4.8.1	11	5	3	1	
침해요인	개발 환경에서 다뤄지는 개인 보호조치가 없기 때문에 개발				네 대한 기 <mark>술적</mark>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이성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4.8.2	11	5	3	1	
침해요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다루는 화면에서 마스킹 처리, 복사 붙여넣기 등 클립보드 기능의 제한, 키보드 해킹 방지 등의 보호대책이 없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용자가 접근 시에 개인 정보를 손쉽게 유출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이하드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4.8.3	9	3	3	1	
침해요인	개인정보를 전자적 환경이 아 시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 유를 출이 더 용이해짐.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4.8.4	9	3	3	1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할 시에는 모든 항목에 대한 출력이 가능하고 용도가 특정 되어있					
침해요인	지 않으면 해당 문서를 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얻게 되는 위험성이 존재함					

5) 특정 기준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5.1.2	7	5	1	1		
침해요인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할 시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						
검애표인	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로 설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5.1.3	9	5	3	1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정보를 다루기도 하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이에 대한 인지를 할						
침해요인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이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영상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5.1.4	11	5	2	1.5		
	해당 영상에 <mark>대한 임의조작이</mark> 이루어지거나 음성 녹음까지 이어진다면 개인정보에 <mark>대한</mark>						
침해요인	처리가 과해지는 것이기에 수집해야 할 정보를 이상으로 얻을 수 있고 정보의 무결 <mark>성 원</mark> 칙에도 벗어남.						
 자산명	기에도 첫이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급 · 준거성		
질의문 코드	5.3.2	11	5	2	1.5		
-	생체인식정보의 비적절한 관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고 생체인식정보에						
침해요인	대한 처리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정보 제공을 반대할 수 있음.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5.5.3	9	5	2	1		
침해요인	가명정보가 시간이 지난 후에 식별이 가능해지는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으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이 존재함.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5.5.4	7	5	1	1		
침해요인	가명정보 결합 시 안전성 부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존재함.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이하드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5.5.5	8	5	1	1.5		
침해요인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해 결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분리 보관과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유출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수 있음.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이치트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5.5.6	8	5	1	1.5		
침해요인	추가정보는 가명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의 개인정보로 유추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추가 정보에 대한 저장을 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저장 시에는 안전한 관리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이하드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5.6.1	7	5	1	1		
침해요인	업무용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집이 되는 경우인데 본 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이 잘못된 접근으로 업무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존재함.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이하ㄷ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5.6.2	9	5	2	1 漢		
침해요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불빛, 소리 등과 같은 방법이 명시되지 않으면 잘못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5.6.3	7	5	1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을 할 때 명확한 규정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운영을 하면 적법하게 촬영을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계획에 어긋남						